2025년 상반기 박물관·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신청 매뉴얼

2025. 1.



차 례

1단계: 자격증 신청요건 확인

2단계: 제출서류 준비

3단계: 온라인 신청

4단계: 신청서 및 자료제출

1단계

자격증 신청요건 확인

○ 등급별 자격요건 확인

- 신청자의 취득학위, 실무경력 기간 등을 종합하여 등급별 자격요 건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등 급	구 분	자 격 요 건
1급 정학예사	승급	▶ 2급 정학예사 자격 취득 후 경력인정대상기관 재직경력1)이 7년 이상
2급 정학예사		▶ 3급 정학예사 자격 취득 후 경력인정대상기관 재직경력이 5년 이상
3급 정학예사		▶ 준학예사 자격 취득 후 경력인정대상기관 재직경력이 4년 이상
3급	신규	▶ 박사학위 취득자로 경력인정대상기관²) 실무경력3)이 1년 이상
정학예사		▶ 석사학위 취득자로 경력인정대상기관 실무경력 이 2년 이상
준학예사		▶ 「고등교육법」에 의거 학사학위 이상 취득(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 포함) 후 준학예사 시험 합격자로 경력인정대상기관 실무경력 1년 이상
		▶ 「고등교육법」에 의거 3년제 전문학사학위 취득(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 포함) 후 준학예사 시험 합격자로 경력인정대상기관 실무경력 2년 이상
		▶ 「고등교육법」에 의거 2년제 전문학사학위 취득(법령에 따라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 포함) 후준학예사 시험 합격자로 경력인정대상기관 실무경력 3년 이상
		▶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 미소지자로 준학예사 시험 합격, 경력인정대상기관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

[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3조(학예사 자격요건 등) 참조]

¹⁾ 승급 신청 시 필요한 재직경력은 경력인정대상기관과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의 학예 근무경력을 말합니다.

^{※「}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」제5조에 의거하여 등록한 시설에서의 학예실무경력만을 박물관·미술 관 학예사 자격증 취득 및 승급에 필요한 경력으로 인정합니다.

²⁾ 경력인정대상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① 등록된 국·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

② 등록된 사립·대학 박물관·미술관 중 인력·시설·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실적을 실사하여 박물관·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기관(http://www.museum.go.kr/site/main/content/career_accreditation 참조)

[※] 경력인정대상기관의 분관 형태로 운영되는 시설의 경력 인정 여부는 본관과 별도로「박물관·미술 관 진흥법」제 5조에 의거하여 박물관·미술관으로 등록한 시설에 한해 인정합니다.(2026년 상반기 심 의 적용)

³⁾ 신규 취득 시 요구되는 실무경력은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경력을 말합니다.

○ 실무경력 인정분야 확인

- 박물관 · 미술관 재직 시, 수행한 업무가 학예사 자격증을 신청 할 수 있는 인정분야인지를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구분	내 용
	■ 박물관·미술관의 전시, 조사, 연구, 자료수집, 소장품 등록·관리·복제·보존처
인	리, 교육, 전시 공간디자인 등 학예분야 업무
	■ 박물관, 미술관 업무의 일환으로 수행한 학술연구
 정	※ 학술지에 발표하거나 단행본으로 발간하였을 경우 소속 기관의 학술 업무로 진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
	■ 박물관·미술관의 학예실무를 수반한 각종 간행물(전시도록, 보고서, 연구서,
분	교육교재, 소책자, 리플릿 등)의 발간
<u> </u>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
O‡	※ 경력인정대상기관 소속으로 학예업무를 수행하여야 인정
or	(경력인정대상기관 현황은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(www.museum.go.kr) 내
	소식·참여」→「학예사자격증 안내」참조)
	■ 일반 행정 분야 : 예산, 감사, 평가, 행정지원, 관리, 방호, 서무, 총괄 등
	■ 전시실 작품관리원(방호업무)
	■ 도슨트(전시해설사), 교육 강사, 단순 업무(시설 안내, 전시장 지킴이, 자원봉사,
	재능기부 등), 학예업무가 수반되지 않은 홍보(마케팅) 및 출판
제	■ 학부 재학 중 경력(재학 중 발굴조사 참여 경력 등)
	■ 박물관·미술관이 아닌 조직 및 기관에서의 경력(비엔날레조직위원회, 문화재단,
외	박물관 건립 TF, 추진단 등)
	■ 박물관·미술관 직원이 아니며, 영리를 목적으로 박물관·미술관과 용역계약을 맺고
분	업무를 진행한 경력(1인 기업, 프로젝트 포함), 프리랜서
	■ 학예직이 아닌 행정직 등이 순환근무 방식으로 학예실무를 수행한 경력 - 민화교 해정조교 항과조교
O‡	■ 대학교 행정조교, 학과조교 ■ 아르바이트 및 일용직(보험 미가입 및 단기 시간제 근무)
	■ 무급으로 수행한 경력(급여 미지급, 보험 미가입) ■ 2개 이상의 기관에 근무기간 중복으로 학예실무를 한 경우
	■ 2개 이성의 기관에 근무기간 궁목으로 악에얼구들 안 경우 ■ 이 외에도 경력인정대상기관 소속 근무경력이 아니거나 직접 학예실무를
	■ 이 외에도 경력인성대성기관 조속 근무경력이 아디거나 직접 역에설무들 수행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
	1 6학자기프 단단학계 학년은 6구

2단계 제출서류 준비

○ 학예사 자격증 신청을 위한 제반 서류 준비

- 학예사 자격증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류, 경력증빙자료, 학예 실무증빙자료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위 자료는 자격증 심사 시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.
 - . 신청서류 : 자격증 신청을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
 - . 경력증빙자료 :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제 재직·경력기간을 확인
 - . 학예실무증빙자료 : 학예실무로 인정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

① 제출서류

구분	제 출 서 류
	1. 신청서(신청 누리집에서 작성 후 출력) 2. 증빙자료 목록(신청 누리집에서 작성 후 축력)
신규 (정 3급)	2. 증빙자료 목록(신청 누리집에서 작성 후 출력) 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신청 누리집에서 양식 출력 후, 자필 서명) 4.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(석·박사학위 소지자) ※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/학위수여예정증명서 제출 가능 5. 최종학교 학위논문 표지·목차 사본(석·박사학위 소지자) ※ 국외학위 취득자는 조회 신청서,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※ 논문 박사 학위 과정을 이수한 경우, 관련 학칙을 제출해야 함 5.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·경력증명서 또는 실무경력확인서의 원본 ※ 재직·경력증명서의 경우, 경력기간 동안의 모든 경력사항(부서이동, 근무부서, 근무기간, 직급이나 직위, 담당업무, 휴직 등)이 기재돼야 함 ※ 자격증 신청자의 직위(학예사/연구보조원/인턴 등)와 경력기간을 기재해야 함 ※ 비상근 또는 인턴의 경우, 근무기간 및 총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기입해야 함 ※ 제출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7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※ 건강보험 가입기간은 재직·경력증명서 또는 실무경력확인서 상의 경력기간을 포함해야 함 ※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(minwon.nhis.or.kr)에서 출력 ※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급여내역(은행 발급) 제출 3. 학예실무증빙자료(3쪽 <표 1> 참조)

	1. 신청서(신청 누리집에서 작성 후 출력)
	2. 증빙자료 목록(신청 누리집에서 작성 후 출력)
	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신청 누리집에서 양식 출력 후, 자필 서명)
	4. 준학예사 시험 합격증 또는 합격 확인서의 사본(90일 이내 발급분)
	5.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증 사본
	※ 국외학위 취득자는 조회 신청서,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
	※ 논문 박사 학위 과정을 이수한 경우, 관련 학칙을 제출해야 함
	6.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·경력증명서 또는 실무경력확인서의 원본
신 규	※ 재직·경력증명서의 경우, 경력기간 동안의 모든 경력사항(부서이동, 근무부서, 근무기간,
(준학예사)	직급이나 직위, 담당업무, 휴직 등)이 기재돼야 함
	※ 자격증 신청자의 직위(학예사/연구보조원/인턴 등)와 경력기간을 기재해야 함
	※ 비상근 또는 인턴의 경우, 근무기간 및 총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기입해야 함
	※ 제출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
	7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
	※ 건강보험 가입기간은 재직·경력증명서 또는 실무경력확인서 상의 경력기간을 포함해야 함
	※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(minwon.nhis.or.kr)에서 출력
	※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급여내역(은행 발급) 제출
	8. 학예실무증빙자료(3쪽 <표 1> 참조)

구분	제 출 서 류
승 급 ·준 →정3급 ·정3급→정2급	지출서류 1. 신청서(신청 누리집에서 작성 후 출력) 2. 증빙자료 목록(신청 누리집에서 작성 후 출력) 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신청 누리집에서 양식 출력 후, 자필 서명) 4. 취득한 학예사 자격증(준학예사 / 정학예사 3급 / 정학예사 2급)의 사본 5.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·경력증명서 또는 실무경력확인서의 원본 ※ 재직·경력증명서의 경우, 경력기간 동안의 모든 경력사항(부서이동, 근무부서, 근무기간, 직급이나 직위, 담당업무, 휴직 등)이 기재돼야 함 ※ 자격증 신청자의 직위(학예사/연구보조원/인턴 등)와 경력기간을 기재해야 함
·정2급→정1급	※ 비상근 또는 인턴의 경우, 근무기간 및 총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기입해야 함 ※ 제출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6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본 ※ 건강보험 가입기간은 재직·경력증명서 또는 실무경력확인서 상의 경력기간을 포함해야 함 ※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(minwon.nhis.or.kr)에서 출력 7. 학예실무증빙자료(3쪽 <표 1> 참조)

② 경력과 학예실무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종류

구분	종 류
경력 증빙 자료	○ 박물관·미술관 소속 경력의 증빙자료 - 국·공·사립·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의 재직·경력증명서 또는 실무경력확인서 원본 ※ 재직·경력증명서의 경우, 경력기간 동안의 모든 경력사항(부서이동, 근무부서, 근무기간, 직급이나 직위, 담당업무, 휴직 등)이 기재돼야 함 - 건강보험(직장가입자)자격득실확인서 원본(건강보험 가입기간이 재직·경력기간을 포함해야 함) ※ 재단, 협회 등에 의하여 위탁 운영되는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경력인정대상기관과 위탁 운영 주체와의 관계 증빙자료 사본(공문, 계약서 등) 제출
학예	○ 박물관·미술관의 학예실무(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수집·관리·보존·조사·연구·전시·교육)를 이행한 증빙자료 - 박물관의 학예실무로 생산한 도록, 보고서, 활동지, 교재, 리플릿 등의 인쇄 자료 사본 ※ 표지·목차·판권 및 신청자 이름이 명기된 부분의 사본(도록·보고서 등 책자 원본은 접수 불가) - 신청자가 작성한 등록카드, 처리카드 등 소장품 관리 및 보존처리 관련 증빙자료의 사본 (관인 날인 또는 담당자 서명)
실무 증빙 자료	* 신청자가 학예실무를 증빙할 자료의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, 아래 증빙 서류 제출 가능 ① 신청자가 생산한 공문서(기획안, 결과보고서 등 붙임 자료 포함)의 사본 ② 신청자가 기획 및 제작에 참여한 프로그램 운영 기획(안) 및 결과보고 등의 사본 ③ 신청자가 학예실무를 담당하였음이 명기된 공문, 업무분장표의 사본 ④ 근무일지 또는 월별업무보고서의 사본(월 1장씩, 관인 날인 또는 담당자 서명) ⑤ 근무기간(실습기간) 동안의 업무보고서 또는 교육실습보고서의 사본(관인 날인 또는 담당자 서명) ** 위의 모든 증빙자료는 신청자가 경력기간동안 학예실무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※ 신청자는 위의 경력 증빙자료 및 학예실무 증빙자료를 충분히 확인한 뒤 제출하기 바랍니다. 심사 준비과정에서 필요 시 학예실무 증빙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3단계 온라인 신청

○ 학예사자격증 신청 누리집에서 자격증 신청

- 신청방법 : <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누리집> (http://www.museum.go.kr/curator)
- 신청절차
 - ① 누리집 회원가입
 - ② 내용입력 및 신청
 - ③ 제출자료 출력(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, 증빙자료 목록 등)

○ 신청 절차

① 누리집 회원가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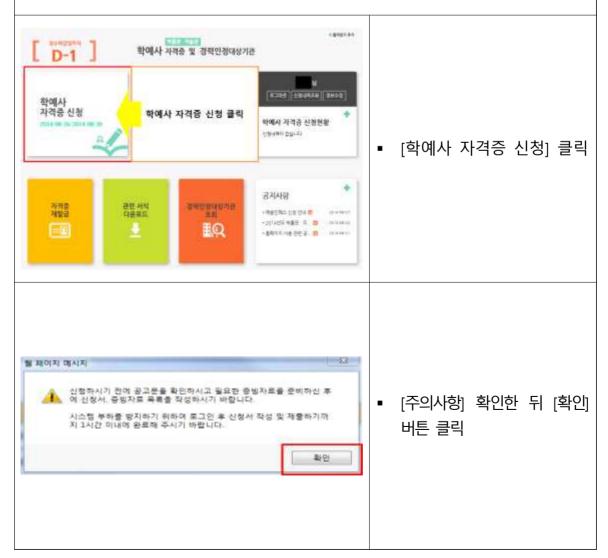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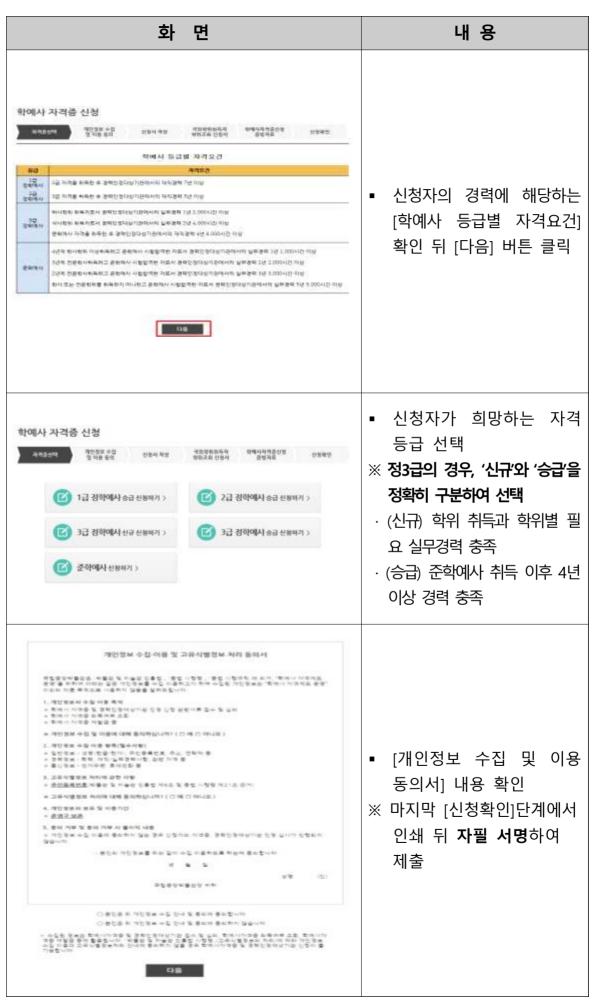
② 내용입력 및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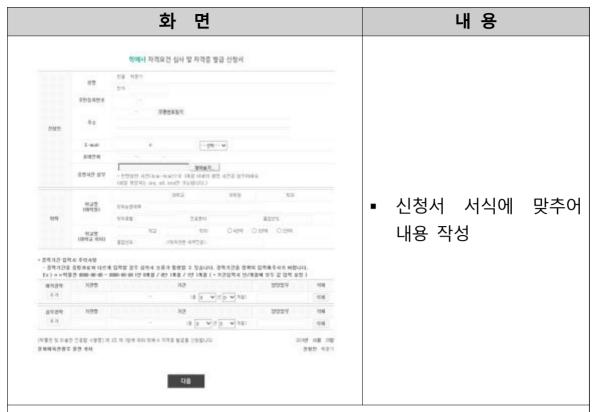


※ 작성 시 참고사항

· 신청서 입력시간: 시스템 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로그인 뒤 신청서 작성 및 제출까지 1시간이 초과하면 자동 로그아웃됨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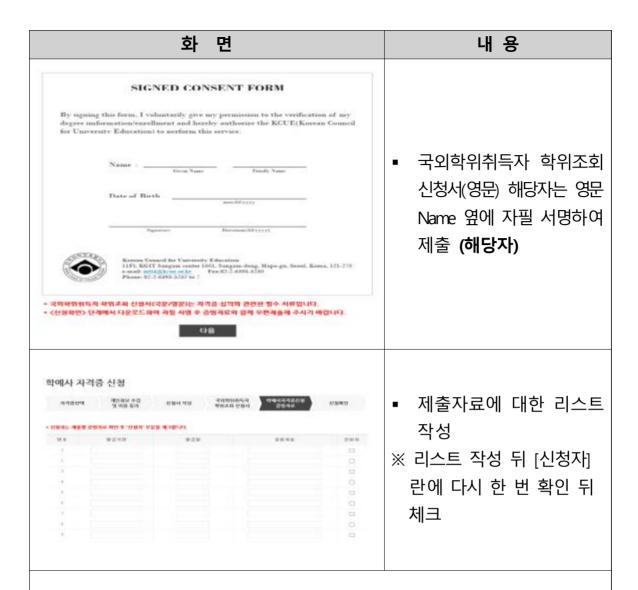


※ 작성 시 참고사항

- · 사 진: 자격증 제작 시 첨부되는 사진으로 최근 6개월 이내의 촬영한 사진 첨부 (해상도 300dpi/3*4cm)
- · 전공분야: 자격증에 기재되는 사항임 (학예사운영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최종 학력의 전공 및 학위논문 등을 고려하여 반영)
- · 학 력: 대학교(학부 졸업 이후부터 경력이 인정됨) 대학원(석사/박사 최종 학력 입력-학위에 따라 자격요건이 다름)



■ 국외학위취득자 학위조회 신청서(국문)는 한글성명 옆에 자필 서명하여 제출 (해당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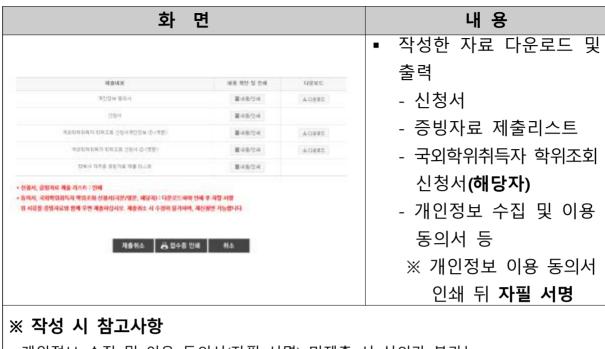
※ 작성 시 참고사항

- · 증빙자료 리스트: 제출할 증빙자료에 대한 리스트 작성 뒤 [신청자]에 체크한 리스트는 제출 증빙자료로 출력됨
- · 누리집에 신청한 내용과 등기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, 제출한 증빙자료에 기반하여 심의가 진행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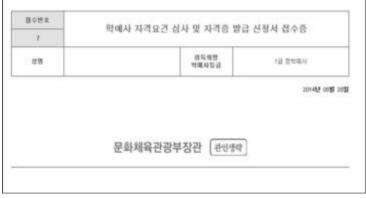


- 작성한 내용 확인 뒤 [제출하기] 클릭
- ※ 제출 처리 후, 수정 불가함.
 내용수정이 필요한 경우,
 접수취소 및 재신청

③ 제출자료 출력



·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(자필 서명) 미제출 시 심의가 불가능



- 접수증 출력
- ※ 접수증의 접수번호 확인.'제출서류 총괄표', '제출 서류 봉투'에 정확히 기재

4단계 신청서 및 자료제출

○ 제출자료

- '2단계 신청서류 준비'에 따라 준비한 제출서류 일체
- '3단계 온라인 신청'에 따라 출력한 자료 ※ '학예사 자격증 신청자 제출서류 총괄표' 포함

○ 신청서 및 자료제출 방법

- 우편제출 및 방문제출

구 분	내 용
우편 제출	 ● 등기우편 제출 ● 우편제출 마지막 날 소인까지 인정 ● 보낼 주소 - (04383)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미래전략담당관 학예사자격증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담당자 앞
방문 제출	 지정기간 내 제출(1일간, 09:00~18:00) 제출 장소: 국립중앙박물관(자세한 장소는 공고문 참조) 방문제출 후 방문접수증 수령 ※ 점심시간(12:00~13:00)에는 접수하지 않음

- 방문제출처 약도



○ 기타 유의사항

- 신청자는 증빙자료를 충분히 확인한 뒤 제출하기 바랍니다. 심사 준비과정에서 필요 시 증빙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- 제출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도록, 보고서 등 책자는 접수가 불가하니 표지·목차·판권 및 신 청자 이름이 명기된 부분의 사본을 제출하기 바랍니다.
-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도착한 서류는 반송합니다.
-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학예사 자격 부결 및 취소 처분과 함께 공·사문서 위조, 변조 등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○ 학예사자격증 누리집 문제해결 방법

- 다운로드 문제해결
 - : 브라우저(browser) 상단메뉴에서 [도구→인터넷옵션→고급] 순으로 선택→'URL을 항상 UTF-8로 보냄(다시 시작해야 함)' 항 목을 찾아 체크표시 부분을 클릭하여 체크표시 지우고[확인] 클릭(체크표시가 되어 있으면 첨부파일명이 한글인 경우 열리 지 않을 수 있습니다.)→브라우저 전체를 닫았다가 다시 오픈
- 인쇄문제 해결
 - : 인쇄물이 흑색(회색)으로 나오면, 페이지 설정에서 배경색 및 이미지 인쇄 체크 칸 해제한 뒤 인쇄
 - : 인쇄과정에서 용지 한 면에 두 쪽이 인쇄될 경우에는 인쇄방식을 자동인쇄로 변경한 뒤 인쇄
- 오류 및 실행문제 해결
 - : 로그인 / 웹페이지 오류 등 오류 시 호환성을 설정
 - : 인터넷 창 → [도구] → [호환성 보기 설정] → 해당 누리집 추가